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44 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이병진·정진욱·문대림

김문수 · 허성무 · 박용갑

송옥주 · 권향엽 · 이원택

이상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(제34조) 및 기본권교육(제38조제1항)과 성인지교육(제38조제2항)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「군형법」이나 「군사법원법」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,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,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.

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,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 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8조).

법률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호 외의 부분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"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"을 각각 "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교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"을 "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"을 "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교육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"을 "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교육의"를 "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건법교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"을 "제7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교육"으로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군형법」, 「군사법원법」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교육(이하 "군법교육"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	제38조(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군 관
	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임
	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기
	하기 위하여 「군형법」, 「군
	사법원법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교육
	(이하 "군법교육"이라 한다)을
	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
	<u>다.</u>
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	<u>4</u>
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기본</u>	<u>기본</u>
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	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	교육
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	
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	
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<u>기본</u>	<u>기본</u>
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	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
하여야 한다.	교육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	<u>⑤</u>
령관은 <u>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</u>	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

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 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 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 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・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부터 <u>제6항까지 외에</u> <u>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</u>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<u>등 및 군법교육</u>
<u>⑥</u>
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
군법교육의
<u>⑦</u>
기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
<u>및 군법교육</u>
<u>⑧</u> <u>제7항까지 외에 기</u>
본권교육, 성인지교육등 및 군
법교육